



중앙법률원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26 (우.07328)

TEL: 02-6277-0125, 0153, 0122, FAX: 02-6277-0156

94kimhyung@hanmail.net, cerca@nate.com, chihalim@naver.com

2018. 3. .

수 신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대구대학교노동조합
참 조
제 목 “총장후보선출 관련” 등 검토

위 제목 기재의 질의에 관하여 검토를 마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대표변호사 김 형 동



담당변호사 장 진 영



담당변호사 지 하 림



본 의견서는 저희 법무법인 중앙법률원에서 검토한 의견으로서 다른 법적 의견도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의견서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으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내용

대구대학교(이하 “학교”라 합니다)는 2018. 5.경 차기 총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에 직원이 참여하도록 정하였고, 이에 학교는 여러 취업규칙을 통해 총장후보 선출에 관한 선거권자, 선출방법 등 선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았습니다.

※ 2017학년도 대구대학교 단체협약서

제2조(협약의 우선 및 기준의 효력) 본 협약은 대학이 정한 제 규정·규칙에 우선하며 본 협약 중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에 미달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제28조(총장후보선출) 총장선출 방식의 결정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한다. 단, 총장후보를 추천하거나, 총장 후보선출을 위한 선거를 할 때에는 민주적인 원칙과 협의에 따라 직원이 참여한다.

※ 대구대학교 교수회 규정

제6조(권한) ① 전체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 6. (생략)

② 전체교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장, 부의장, 감사의 선출

2. 법인이사회에 추천할 총장후보의 선출

3. 대학평의회(학칙 제94조) 교원평의원의 선출

4. 의안 관련 보직자의 출석 요구 및 현황청취,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5. 제2호 내지 제3호의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선출방법 등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정한다.

③ 총장, 부총장, 처·실장 등은 의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교수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규정

제9조(선거권자) 총장후보 선거권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직원으로 한다. 직원의 참여 비율은 당해 연도 교수회와 직원대표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전체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27조(직원의 선거참여비율 및 득표 산정) ① 직원의 선거참여비율 및 입후보자별 직원득표의 산정은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규정 제9조에 따라 선거일 전에 결정한다.

② 직원의 선거참여비율 및 입후보자별 직원득표의 산정방법은 선거일 전에 공고한다.

이에 귀 노조는 아래와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 가. 직원참여비율에 대하여 교수회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교수회 단독으로 총장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직원참여비율에 대하여 교수회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귀 노조의 대응 방안

2. 검토

- 가. 직원참여비율에 대하여 교수회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교수회 단독으로 총장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 교수회는 단독으로 총장후보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2) 근거¹⁾

노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의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고, 이에 따라 학교는 취업규칙을 통해 직원의 총장후보 선출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학교가 직원들을 배제한 채 교수회 단독으로 총장후보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은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할 때에는 민주적인 원칙과 협의에 따라 직원이 참여한다”고 하여,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에 대한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1) 위 1.에 인용된 규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구대학교 교수회 규정>은 총장후보의 선출을 전체교수회의 권한으로 두는 동시에, 그에 대한 선거권자, 피선거권자, 선출방법 등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출규정>은 “총장후보 선거권자는 선거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직원으로 한다”고 하여, 직원의 총장후보 선출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구대학교 총장후보 선거관리 시행세칙>은 직원의 선거 참여비율을 선거일 전에 결정하고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참여비율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교수회와 직원대표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전체교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교수회와 직원대표 사이에 직원참여 비율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다거나 이에 대하여 전체교수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총장후보 선출에 대한 선거권을 완전 제한하는 것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회는 직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총장후보를 선출할 수 없습니다.

나. 직원참여비율에 대하여 교수회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귀 노조의 대응 방안

- 1) 답변 : 귀 노조는 학교를 상대로 직원참여 비율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학교 측 잘못으로 선거일 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거

귀 노조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학교를 상대로 직원참여 비율을 정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학교 측의 잘못으로 총장후보 선출 선거일 전에 비율이 협의되지 않으면 단체협약 등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귀 노조에게 충분한 협의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직원이 총장후보 선출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결국 학교가 귀 노조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390조2).

다만 위와 같은 경우라도 직원참여 비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노사 중 어느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배상청구의 가능 여부, 과실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귀 노조는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노동조합법 위반을 문제 삼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 제9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 '총장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은 위 열거된 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
니다(노동조합법 제92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2010.1.1.>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서의 내용 또는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끝.